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02
----------	-------

발의연월일 : 2026. 8. 4.

발 의 자 : 김태규 · 서명옥 · 김기웅
서범수 · 엄태영 · 박성민
박상웅 · 최은석 · 구자근
김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 사용 증가로 인하여 전력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전력소비 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용 전력에 대한 누진제 개편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폭염·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인하여 냉·난방의 수요가 급증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누진제 적용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주의보·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한파경보가 4일 이상 발효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받아야 한다”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폭염주의보·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한파경보가 한 달 동안 총 4회 이상 발효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은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의 단가를 높이는 누진제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 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u>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 ----- ----- ----- ----- ----- <u>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폭염주의보 · 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 · 한파경보가 한 달 동안 총 4회 이상 발효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은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의 단가를 높이는 누진제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